##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763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구자근・박준태・박덕흠

김도읍 · 김위상 · 김선교

인요한 • 권영세 • 김석기

유상범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 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 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 해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6조제1호·제2호 신설).

#### 법률 제 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제6항"을 "제11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료 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② (생	전용주차구역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
	설,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u>한다.</u>
<u>③</u> ~ <u>⑩</u> (생 략)	<u>④</u> ~ <u>③</u> (현행 제3항부터 제1
	2항까지와 같음)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u>제11조</u>	제11조
<u>의2제6항</u> 에 따른 지원에 필요	<u> 의2제7항</u>
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	제16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u>
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를 한</u>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 &lt;신 설&gt;</u>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 <신 설>

- ② <u>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u>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③ (생 략)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u>자</u>
2. 제11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
② 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

③ (현행과 같음)